##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81

발의연월일: 2025. 5. 12.

발 의 자: 박수현 · 윤종오 · 이개호

임오경 · 조계원 · 윤준병

이정문 • 김재원 • 황운하

조인철 · 장종태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 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				
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				
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u>2025년 12월 31일</u> 까지 다음 각	2035년 12월 31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				
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				
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				
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